

2024년 보육교직원 법정 및 필수 의무교육 안내

교육명	구분	내용
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복지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• 아동복지법 제26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•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-5-2-①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26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1회(1시간 이상) ★ 인천시 특별강화: 인천시 내 어린이집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3시간 의무 이수
	교육	•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어린이집 자체교육, 온라인 교육 등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•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3조
	대상	• 사업주 및 모든 직원
	횟수	• 연 1회 이상
	교육	•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,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등
개인정보 보호교육 (CCTV의무화)	근거	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	대상	• 개인정보 취급자
	횟수	• 연 1회
	교육	•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온라인교육 등
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동법 시행령 제2조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 ★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
	교육	•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,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.
	비고	• 매년 1.1~12.31까지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까지 「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」에 입력해야 함.
안전관리교육 (안전사고 예방교육)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]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9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보육교직원 ※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,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	횟수	• 연 1회
	교육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교육(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, 유아담당교사 중 택 1)

교육명	구분	내용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,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•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교육
장애인식개선교육 (주무부처 -보건복지부)	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• 집합, 인터넷 강의,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자율 운영 ★ 2023년도부터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(미실시한 경우, 부진기관으로 통보)
비고	• 매년 1.1.~12.31.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.	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(주무부처 -고용노동부)	근거	•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• 직원연수, 조회, 회의,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, 체험교육 등
어린이 안전교육 (주무부처 -행정안전부)	근거	•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어린이안전법) 제16조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9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★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조리원, 운전사 등은 대상자가 아님
	횟수	• 연 1회(4시간: 이론 2시간+실습 2시간) ★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.
	교육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★ 실습은 집합교육만 인정 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'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'에서만 이수
비고	•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.	
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	근거	• 도로교통법 제5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31조2항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5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6) •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3-4-3-㉓
	대상	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
	횟수	• 1회 교육 시 3시간 이상 • 신규교육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, 동승하기 전 • 정기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	방법	• 운영자 및 운전자: 집합교육 • 동승하는 성인: 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
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22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
	비고	•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어린이집공제회) 이수 시 같음 가능

교육명	구분	내용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	근거	• 결핵예방법 제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
	교육	• 집합교육, 동영상 교육 등
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,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1) •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3-1-1-④
	대상	• 연면적 430㎡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
	횟수	• 1회 교육 시 6시간 • 신규교육: 소유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•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	교육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
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교육	근거	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2)
	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• 연 1회
	비고	•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어린이집공제회) 이수 시 같음 가능
영유아 성 행동 관리 및 대응교육	근거	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23)
	대상	•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
	횟수	• 연 1회
석면안전관리교육	근거	•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35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• 2023년 보육사업안내(p.112)
	대상	• '09.1.1.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
	횟수	• 신규교육: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•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(4시간)
	교육	•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등
퇴직연금교육	근거	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	대상	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
	횟수	• 연 1회 이상
	교육	• 온라인 교육, 서면 교육
건강·영양교육	근거	•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3-3-3-②
	대상	• 원장, 담임교사(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), 조리원 ★ 입사 1개월 미만 교직원 제외
	횟수	• 연 1회 이상 ★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대 실시 기록 확인
	교육	• 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 등

※ 어린이집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